

(인쇄용지(특급) 70g/m²)

주 의 사 항

1. 지정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.
2.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
3. 이 증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.
4. 지정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